#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685 발의연월일: 2024. 8. 9.

발 의 자: 박대출·김상훈·송언석

송석준・구자근・김태호

이종욱 • 이성권 • 박정하

신성범 • 박성훈 • 김예지

박수영 · 이달희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 제2절의2(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삭제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3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87조의6, 제87조의7, 제94조"를 "제9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 제2호의2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89조제3항제4호다목을 삭제한다.

제8장제2절의2(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를 삭제한다.

제103조제1항 중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한다.

제103조의2제3호 중 "제103조의9제2항"을 "제103조의8, 제103조의9제2 항"으로 한다.

제103조의3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 준의 1천분의 10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 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 1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 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 ⑦ 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제10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8(기장 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소득세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제103조의13제2항제2호·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03조의59제1항제1호가목 중 "매매차익,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매매차익"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74조, 제87조의23"을 "제74조"로, "매매차익예정신고, 같은 법 제87조의21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매매차익예정신고"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제74조, 제87조의23"을 "제74조"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22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3항을 삭제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 다. 이 경우 각 호의 소득의 범 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87조의6, 제87조 -----제94조-----의7,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르고, 신탁의 이익 의 구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다. 1. 종합소득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 지방소득에서 제2호, 제2호의 -----제2호-----2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 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삭 제> 2의2. 금융투자소득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9조(납세지 등) ① • ② (생 제89조(납세지 등) ① • ② (현 략)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 1. ~ 3. (생략)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 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 다만, 다음 각목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목에서 정하는 납세지로 한다.

가. • 나. (생략)

다. 제103조의13제1항 후단에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좌보유자의 인출을 제한한경우 그 금융투자소득에

행과 같음)
③
 1. ~ 3. (현행과 같음)
4
· 

가.·나. (현행과 같음) <u><삭 제></u> 
 대한
 지방소득세: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해당
 계좌

 의
 개설지

제2절의2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 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2조의2(과세표준) ① 금융투 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 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 세법」 제87조의4에 따라 계산 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 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 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 세표준을 말한다)과 동일한 금 액으로 한다.

제102조의3(세율) ① 금융투자소 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삭 제>

<삭 제>

과세표 준	세율	
3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3억원 초과	60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의 1천분의 2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02조의4(세액계산의 순서) 금 용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 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제102조의2에 따른 과세표준 에 제102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 액에서 제102조의5에 따라 공 제되거나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

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 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 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 산세를 각각 더하여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제102조의5(세액공제 및 세액감 <삭 제> 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 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 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 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 는 것으로 한다.

제102조의6(예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7조 의21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예 정신고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기한에 2개 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 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 소득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납 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 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 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금 용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 득세 예정신고를 한 때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 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 야 한다.

- 1. 제102조의5에 따른 공제세액및 감면세액
- 2. 제98조 및 제102조의8에 따 른 수시부과세액

제102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 법」 제87조의23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 고를 할 때에는 해당 신고기한 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 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지방자 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 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② 「소득세법」 제87조의23제 3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 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제1항에 따른 금융투 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 ③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금 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 득세 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금 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 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 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

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 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 부하여야 한다.

- 제102조의5에 따른 공제세액
   및 감면세액
- 2. 제102조의6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제97조 및 제1
   02조의8에 따라 결정・경정한
   세액
- 3. 제98조 및 제102조의8에 따 른 수시부과세액
- 4.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정 수세액

제102조의8(수정신고·결정·경 정·수시부과·징수·환급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 소득세의 수정신고·결정·경 정·수시부과·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 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세 과세표준은 <u>종합소득</u>, 퇴직 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제103조(과세표=	순) (1)		
	-종합소득	및	퇴
지소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 분하여 계산한다.

#### ② ~ ④ (생 략)

- 제103조의2(세액계산의 순서) 양 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 1. 2. (생략)
  -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03조의9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더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 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 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 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2(세액계산의 순서)

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 11. (생략)

<신 설>

<신 설>

14. (생 략) ② ~ ⑥ (생 략) <신 설>

⑧ ~ ⑩ (생 략)<신 설>

\_\_\_\_\_\_

1. ~ 11. (현행과 같음)

- 1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 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 준의 1천분의 20
- 1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 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14. (현행과 같음)
- ② ~ ⑥ (현행과 같음)
- ① 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 8 ~ 10 (현행과 같음)제103조의8(기장 불성실 가산세)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저 (생 략)

② 특별장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장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장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
의 1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
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
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
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
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세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현행과 같음)
2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하다

- 1. (생략)
- 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 <삭 제> 방소득세의 경우 해당 과세기 간의 반기 중에 계좌가 해지 된 경우에는 그 반기 종료일 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 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 <삭 제>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 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에는 각 계좌보유자별 특 별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그 인출을 제 한할 수 있다.
- ④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 | <삭 제> 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투 자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득 세법 . 제148조의2제5항에 따 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 (현행과 같음)

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배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u>⑤</u> · <u>⑥</u> (생 략)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 역 등의 통보)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소득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 비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 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후 신고는 제외한다)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한 내로 한다.

가. 「소득세법」 제14조제2

(	3)	• (2	[] (현혀	를 제5 <sup>-</sup>	하 밀	제6
		으 가 같		0 /110	0 🗡	<i>γ</i> η <b>0</b>
			ㅁ / 59(지방	소득세	] 관련	세
			통보)			
-						
-						
_						
-						
-						
-						
-						
-						
-	1					
	フ	' <del>}</del>				

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 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의 매매차익, 같은 법 제8 매매차익-----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 득과세표준 또는 같은 법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과 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 신고 방식으로 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즉시 나. 「소득세법」 제70조. 제 71조, 제74조, 제87조의23 -----제74조-----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 준 확정신고와 같은 법 제 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 -----매매차익예정신고 차익예정신고, 같은 법 제 87조의21에 따른 금융투자 소득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경 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 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 터 2개월이 되는 날 다. (현행과 같음) 다. (생략)

- 2. ~ 4. (생 략)
- 5.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87조의23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이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② ~ ④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제74조
② ~ ④ (현행과 같음)